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1992. 12. 26 (대통령령 제13786호)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사하구 보건소 설치조례중 보건소장의 직급 명칭을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과 동일하게 변경

대 상	현 행	개 정
보건 소장의 직급 명칭	지방 의무기정 지방 보건기정 또는 지방 보건기좌	지방 의무서기관 지방 보건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사무관

3. 검토의견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직급명칭의 획일화를 기함은 물론이고 일반시민의 인식에도 편리하므로 본 조례 개정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